

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6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, 서울 여성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, 복지증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
- 관련법령
 - (공통)법령 : 민법(제32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(개별)법령 : 양성평등기본법
 - 조 례 :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제2항
“시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”

나. 주요 사업

- 여성·가족·보육·저출산, 아동·청소년 관련 정책연구·개발
-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,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
-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
- 국내·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
-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·가족 양립 문화 조성 사업
-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 여성·가족·보육, 아동정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·개발 및 시민체감형 정책실행을 위한 역량지원을 위해 설립된 서울여성가족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,
- 서울여성의 경제력 강화, 체감하는 성주류화, 여성안전과 사회통합, 서울 가족 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9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김진영 (☎ 2133-5031)